

시보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1112호 2020. 3. 20. (금)



시화-철쭉



시조-갈매기



시목-느티나무

고 시

- 삼척시 고시 제5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----- 2
- 삼척시 고시 제60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----- 5

공 고

- 삼척시 공고 제277호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----- 6

공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문화공보실 (전화 : 570-3221, FAX : 570-3132)

삼척시 고시 제2020 - 59호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, 제24조, 제25조에 의거
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. 3. 20.

삼척시장

○ 도로명주소 부여 :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문의재로 2559-7 외 3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		도로명		비고
	주소	고시일	사유	고시일	부여사유	
(별지참조)			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(☎570-3946~9)에
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0. 3. 20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
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
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
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
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
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
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순 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		도로명	
		주 소	고시일	사유	고시일	부여 사유
1	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중마읍리 128-1	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문의재로 2559-7	20200320	가설건축물	20090904	자연지명명칭 반영(문의재)
2	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고천리 68-1	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고내로 210	20200320	가설건축물	20090626	행정구역명복합활용 (고천리,내미로리)
3	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상거노리 427-2	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산길 38	20200320	가설건축물	20090626	행정구역명사용
4	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367-1	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심방금계길 201-15	20200320	건물신축	20090626	지역지명(심방,금계) 복합 활용

도로명주소 부여 내역

구분	순번	종전주소		도로명주소		고시일	사유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		계	4건	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종마음리 128-1	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문의계로 2559-7					
부여	1	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종마음리 128-1	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문의계로 2559-7	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고내로 210	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산길 38	20200320	가설건축물	20090904	자연지명명칭 반영(문의계)	
부여	2	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고천리 68-1	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고내로 210	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산길 38	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심방금계길 201-15	20200320	가설건축물	20090626	행정구역명복합활용 (고천리, 내미로리)	
부여	3	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상거노리 427-2	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산길 38	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367-1	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367-1	20200320	가설건축물	20090626	행정구역명사용	
부여	4	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367-1	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심방금계길 201-15	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심방금계길 201-15	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심방금계길 201-15	20200320	건물신축	20090626	지역지명(심방, 금계)복합 활용	

삼척시 고시 제2020-60호

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

삼척시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. 3. 20.

삼척시장

(단위 : 천원)

회계별	구분	예산액	기정액	증 △ 감	증감률
합	계	715,176,378	595,841,458	119,334,920	20.0%
일	반 회 계	664,012,959	552,375,756	111,637,203	20.2%
특	별 회 계	51,163,419	43,465,702	7,697,717	17.7%
	상 수 도 사 업	27,128,495	24,523,995	2,604,500	10.6%
	하 수 도 사 업	6,285,148	3,836,148	2,449,000	63.8%
	주 택 사 업	65,684	67,000	△1,316	△2.0%
	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9,749,565	9,749,565	-	-
	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지원사업	937,000	714,000	223,000	31.2%
	의료급여기금	1,238,195	1,238,194	1	-
	자활기금운영	1,390,460	1,390,460	-	-
	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	183,000	83,000	100,000	120.5%
	주 차 장	543,570	543,570	-	-
	임대아파트관리운영	3,642,302	1,319,770	2,322,532	176.0%

삼척시 공고 제2020 - 277호

「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3월 16일

삼척시장

**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
보조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**

1. 제안이유

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유도 및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용자추천시기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3조)

- 당초 : 매월 10일까지 접수분을 매월 25일까지 추천
- 변경 : 매주 금요일까지 접수분을 그 다음 주까지 추천

나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【붙임 1】

삼척시 규칙 제 호

**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
보조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**

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
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설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”을 “시설
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운전자금이
라 함은”을 “운전자금이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시설자금이라 함
은”을 “시설자금이란”으로,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용자추천시기) 삼척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매주 금요일까지
접수된 용자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다음 주까지 금융기관에 용자 추천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과”를
각각 “각 호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붙임 3】

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

(제정) 2003.01.13 규칙 제 264호
(일부개정) 2012.03.02 규칙 제 421호 (삼척시 규칙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)
(일부개정) 2017.11.03 규칙 제538호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삼척시 투자유치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자추천자금의 정의 및 범위) ① 「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」(이하 "조례" 라 한다) 제3조의 시설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의 소요자금을 말한다.

1. 공장설립 승인 등을 받은 업체 및 타 지역으로부터 관내에 공장을 이전하는 업체로서 공장설치에 필요한 건축비, 건물매입비, 개·보수비, 부대공사 및 시설 구입비
 2.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건축 사업비 및 그 부대시설 공사비
 3. 관광개발 사업자로 사업실시계획 또는 건축허가를 득한 사업으로 건축사업비 및 그 부대시설 공사비
- ②조례 제3조의 운전자금이라 함은 가동 중인 업체로서 원·부자재구입, 완제품의 제조, 국내·외 판로개척, 개발기술의 사업화, 경영혁신 등 일상적인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.
- ③소상공인의 시설자금이라 함은 내·외부 시설개선, 사업장 이전 신축비 및 그 부대시설 공사비로 하고 운전자금(점포매입비, 임차비는 불가)이라 함은 점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.

제3조(용자추천시기) 용자금의 추천은 매월 10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의하여 매월 25일까지 용자 추천한다.

제4조(용자신청) ①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의 용자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

1. 용자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
 2. 사업계획서(세부사업 내역서 포함)(별지 제2호서식)
 3. 「세무사법」에 의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(재무제표 포함) 또는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창업 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재무제표)
 4. 사업자등록 증명원(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)
 5. 납세증명서
 6. 건물 매입시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경매낙찰서류(3월 이내)사본
 7.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
-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.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11.03.>
- ③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의 용자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<개정 2017.11.03.>

1. 용자 신청서(별지 제3호 서식)
 2. 사업계획서(별지 제4호 서식)
 3. 사업자등록증
 4.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
- ④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1.03.>

제5조(용자승인기준) ①시장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용자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용자추천 심사기준 및 평가표 기준에 따라 기업의 건실도를 평가한다.
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업체로서 100점 중 40점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는 용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용자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추천순위결정시 업체의 자본금, 종업원 수, 매출액, 매장면적, 신장가능성 등을 고려하

【붙임 4】

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

▣ 조례·규칙 제명 :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

▣ 의견제출자
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연 락 처 :

개 정 안	검 토 의 견	
	수정안	검토사유